

대전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나1016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나10162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가단12562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전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피고, 항소인 1. R

2. S

변론 종결 2022. 12. 6.

판결 선고 2022. 12. 20.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가단12562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692,224원과 그 중 10,679,684원에 대하여 2021. 5. 28.부터 2021. 12. 3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2022. 10. 7.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던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제1 신용보증약정	2015. 4. 22.	2016. 4. 21.	20,000,000원
제2 신용보증약정	2020. 4. 22.	2021. 4. 22.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각 금융기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1)

제1 신용보증약정	2015. 4. 22.	2016. 4. 21.	K은행	20,000,000원
제2 신용보증약정	2020. 4. 22.	2021. 4. 22.	기업은행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

C은 위 각 신용보증에 기하여 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제1 신용보증약정	2015. 4. 22.	K은행	기업운전일반자금	20,000,000원
제2 신용보증약정	2020. 4. 22.	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

나. C은 2021. 3. 23. 원리금연체로 인하여 각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2021. 5. 28. 각 금융기관에 아래와 같이 합계 21,357,369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제1 신용보증약정	2021. 5. 28.	K은행	1,277,643원
제2 신용보증약정	기업은행	20,079,726원	
합계			21,357,369원

다. 원고의 C에 대한 위 구상권채권의 연체이자율은 대위변제일인 2021. 5. 28.부터 2021. 12. 31.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는 연 8%이다. 또한 원고와 C 사이에는 각 신용보증약정서에 근거한 미납 추가보증료 27,080원(=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5,990원 +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21,090원)이 존재한다.

라. C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인 2021. 2. 28. 사망하였다. ①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O과 자녀인 P, Q은 2021. 5. 20. 대전가정법원 2021느단10252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② 망인의 직계존속인 어머니 A와 형제자매인 B, 방계혈족 중 3촌 관계에 있는 T, 4촌 관계에 있는 U, V은 2021. 7. 29. 대전가정법원 2021느단10375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으며, ③ 3촌 관계에 있는 W, 4촌 관계에 있는 X, Y은 2021. 7. 19. 대전가정법원 2021느단677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④ 3촌 관계에 있는 Z과 4촌 관계에 있는 AA은 2021. 7. 12. 대전가정법원 2021느단10362호로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으며, ⑤ 3촌 관계에 있는 AB와 4촌 관계에 있는 AC, AD, AE는 2022. 6. 22. 대전가정법원 2022느단10481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마. 망인의 후순위 상속인으로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피고 R과 피고 S가 있고 피고들은 각 1/2 지분을 상속받았다.

바. 원고는 제1심 계속 중 이 사건 피고의 표시를 망인에서 A로 정정하였고, A는 이 사건 소장부분과 위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부분 및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분을 모두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1심법원은 2021. 12. 23. 원고 전부 승소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 A는 위 라.항 ② 기재와 같이 상속포기심판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21. 1. 17.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2. 3. 7. 망인의 후순위 상속인인 W, Z, AB와 피고들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였다가 위 라.항 ③ 내지 ⑤ 기재와 같이 W, Z, AB에 대한 상속포기심판이 확정되자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2) 아. 원고는 2022. 9. 13.

최종적으로 이 사건 청구취지를 피고들에게 이 사건 구상금 채권액 중 각 상속지분에 따른 금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692,224원{= (제1신용보증약정 대위변제금 1,277,643원 + 추가보증료 5,990원 + 제2신용보증약정 대위변제금 20,079,726원 + 추가보증료 21,090원) × 각 1/2 지분, 이하 원 미만 버림}과 그 중 10,678,684원{= 제1신용보증약정 대위변제금 1,277,643원 + 제2신용보증약정 대위변제금 20,079,726원) × 각 1/2 지분}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1. 5. 28.부터 2021. 12. 3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 최종 송달일이 기록상 명백한 2022. 10. 7.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 및 당사자표시정정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윤중

판사윤현정

판사최희정

1) 그 후 C은 제1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21. 4. 16.로, 보증금액을 12,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 원고가 피고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사망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사망자의 상속인이라고 함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제1순위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0. 2.자 2014마1248 결정 참조). 그리고 상속개시 이후 상속의 포기를 통한 상속채무의 순차적 승계 및 그에 따른 상속채무자 확정 곤란성 등 상속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위의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위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9964 판결 참조), 제1심에서 제1순위 상속인들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위 제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다시 그 후순위 상속인으로 표시정정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위 2014마1248 결정). 따라서 원고가 제1심에서 A 등의 상속포기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의 표시를 A로 정정하여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다가 A의 항소로 인한 이 법원 계속 중에 위 상속포기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 후순위 상속인들인 피고들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